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386

발의연월일: 2024. 11. 8.

발 의 자:문진석・이기헌・이광희

이병진 • 복기왕 • 염태영

김교흥 • 정준호 • 장종태

김영환 · 이재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조는 도로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타공사(도로공사 외의 공사)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 도록 원인자부담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인접지역이 분리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굴다리 등 통로를 신설한 후 그 통로의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타공사 시행자의 부담으로 해당 공사를 시행토록 하는 것은 민간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원인자부담금을 폐지하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건설로 인하여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비용의 일 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 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관리청 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35조(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 제35조(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 | |
| 공사시행 명령 등) ① 도로관 | 공사시행 명령 등) ① | | |
| 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 | | | |
| 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 | | | |
|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 | | | |
| 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 | | |
|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 | | | |
| 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 | | |
|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 | | |
|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 | | | |
| 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 | | | |
| 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u><단</u> | | | |
| <u>서 신설></u> | <u>다만,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u> | | |
| | 로공사로 인하여 타공사의 시 | | |
| | 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 | | |
| | 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관리청 | | |
| | 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 | |
| | <u>수 있다.</u> | |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